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y 11, 2026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미국: IRS APMA, 2025 년 APA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발표

미국 IRS 는 최근 APMA(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프로그램의 2025 년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운영 현황 및 관련 분석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5 년은 IRS 자원 축소, 출장 제한, 관세 관련 불확실성 확대 및 연방정부 섣다운 등으로 인해 미국 APA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APMA 조직은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인력의 약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섣다운 기간에는 대부분의 APMA 인력이 임시해고(furlough) 상태에 놓이면서 일부 APA 협상 및 권한있는 과세당국(Competent Authority, "CA") 간 협의 진행에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IRS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운영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APMA 는 2025 년 중 총 110 건의 APA 를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규 APA 신청 역시 178 건에 달하는 등 다국적기업들의 APA 활용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평균 APA 체결 소요기간은 약 44.1 개월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인도 및 일본 관련 쌍방 APA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붕괴(collapse)"가 아닌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표현하며, APMA 가 어려운 운영 환경 속에서도 AP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미종결 APA 사례(pending APA inventory) 증가가 APMA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정책 변화 및 이전가격 이슈 복잡성 증가 등으로 인해 Bilateral APA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경우 APA 및 MAP 일정 관리, 중대한 가정 검토 및 공급망 변화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HMRC, Finance Act 2026 반영을 위한 무형자산 세무지침 개정

영국 HMRC는 최근 Finance Act 2026 ("FA2026")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형자산 관련 세무지침(Intangible Assets Manual)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무형고정자산(Intangible Fixed Assets, "IFA")의 이전 및 권리 허여 거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는 이전가격 규정 적용 대상인 국외특수관계자 거래(cross-border transactions)에 대해 정상가격(arm's length value)을 단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전가격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 및 비금전거래(non-monetary consideration) 등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시장가치(market value)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HMRC는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정상가격 또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재산정(re-casting)하는 규정(CIRD12780) 관련 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HMRC는 특수관계자 간 라이선스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증가 방향의 조정만 허용하는 이른바 "one-way street" 접근법을 인정한 반면, 무형자산 자체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증액 및 감액 조정을 모두 허용하는 기존의 "two-way street" 접근법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HMRC는 합병회계(merger accounting) 적용으로 인해 무형자산이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한 추가 설명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그룹 내 조직재편 등에서 발생하는 장부가 승계 구조와 관련하여 정상가격 또는 시장가치 기준 재산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기존 IFA 제도 하에서 해석상 복잡성이 존재하던 영역에 대해 실무적 명확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사전-2025-법규국조-1132, 2026.02.02

제목: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6 조 제 1 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의 100% 자회사 A법인("합병법인")이 미국 100% 자회사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도록 하였고, 이때 피합병법인 주식은 신주 교부 없이 전량 소각함.
-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미처리결손금을 합하여 부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함
- 한편, 합병법인은 2024사업연도 중 자회사인 미국 C법인으로부터 배당금 \$000를 수령하였고 해당 배당수익으로 인하여 '24사업연도 말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최초로 발생함.
- 합병법인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합병 시 승계한 질의법인에 대한 장기차입금 및 장기미지급이자를 상환함.

2) 질의 내용

- 합병법인의 국조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의 차감 여부

3) 회신

-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03 관세

한국-UAE CEPA, 2026년 5월 1일부로 발효

한국 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1. 한국-UAE CEPA, 2026년 5월 1일부로 발효

2026년 5월 1일부로 한국-UAE CEP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국-UAE CEPA는 품목수 기준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하였으며, 관세철폐 대상 전품목에 대해 최장 10년 내 철폐가 합의된 품목은 품목수 기준 한국 92.5%, UAE 91.2%에 해당합니다.

<한국-UAE CEP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구분	대한민국 양허				UAE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품목수(개)		수입액(백만불)	
전체	11,293	100.0%	15,492	100.0%	7,856	100.0%	4,270	100.0%
즉시 철폐	8,887	78.7%	1,581	10.2%	3,830	48.8%	809	18.9%
5년 철폐	1,135	10.1%	5	0.0%	953	12.1%	57	1.3%
10년 철폐	422	3.7%	9,617	62.1%	2,385	30.4%	2,635	61.7%
최종 관세 철폐율	10,444	92.5%	11,203	72.3%	7,168	91.2%	3,500	82.0%
관세 감축	1	0.0%	4,276	27.6%	4	0.1%	0	0.0%
양허 제외	848	7.5%	14	0.1%	684	8.7%	769	18.0%

한국-UAE CEPA에 따른 단계별 주요 양허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UAE CEP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대한민국 양허		양허 단계	UAE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p>LNG, LPG(프로판, 부탄), 유연탄, 무연탄, 코크스, 에틸렌, 대추야자, 카놀라유, 사료용 조제품, 물, 소주, 소스(겨자, 된장, 춘장 등), 파스타, 코코아조제품, 당류(원당, 포도당, 당밀 등), 식물성 한약재, 철강재용기, 철구조물, 농약, 필름, 금, 니켈스크랩, 알루미늄괴, 동, 광, 기타금속광물, 백시멘트, 스마트폰부품, 원동기부품, 방사선기기, 승용차(중고), 무계 목장관, 기타전자응용기기부품, 프린터, 가열 난방기부품, 냉각기, 자동차부품, 원동기, 타일, 집적회로반도체 등</p>	8,887	즉시 철폐	3,830	<p>화물자동차, 특장차, 캠핑카, 기타자동차부품, 초산비닐, 에틸렌중합체필름, 향수, 메이크업제품, 면도용제품, 포병무기, 탄약, 기타무기류부품, 꿀, 버섯, 고추, 밤, 감귤, 포도, 참외, 사과, 배, 딸기, 꽃감, 떡, 김치, 반도체제조용장비, 혼합크릴렌, 레이저프린터, 컴퓨터부품, 컨트롤러, 밸브, 기타항공기부품, 자동제어기, 저압 배전반, 컴퓨터, 광케이블, 스캐너, LCD, 통신선, 계측기부품, 냉방기부품, 기타의료용기기, 인쇄회로, 주석광, 에틸렌중합체필름 등</p>
<p>프로필렌, 부틸렌, 정밀화학원료(스테아르 산, 타르타르산, 살시실산 등), 포도주, 인삼음료, 잎담배, 효모, 베이커리제품, 면류(당 면, 국수, 냉면 등), 오트밀, 마테, 명란, 참치 (냉동), 향수, 질소비료, 평판디스플레이, 유선통신장비부품, 레이더, 다이아몬드, 도료, 안전유리, 필기구, 주단강, 주방용품, 거울, 알루미늄박, 의약품, 접착제 등</p>	1,135	5년 철폐	953	<p>발포성 폴리스티렌, 기타정밀화학원료, 피부 연화제, 두발용제품, 위생용품, 트랙터, 차량용의자, 냉장고부품, 로켓발사기, 조미김, 인삼, X선방사선기기, 언더셔츠, 인쇄용지, 골프용품, 광택제, 승용완구, 속도계, 압연기, 기타광학기기, 센서, 나일론사, 편직물(날염), 섬유기계, 화물자동차, 인쇄기계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안경, 커팅공구, 낚시용구 등</p>
<p>원유, 벙커씨유, 역청유, NGL, 윤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 폴리프로필렌, 낙타유, 대두유, 올리브, 소시지, 참기름, 과일주스, 사료, 기타 낙농품, 오징어, 새우,</p>	422	10년 철폐	2,385	<p>에어컨, 냉장고, 냉방기, 승용차(가솔린,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소형화물차, 타이어, 연축전지, 클러치, 완충기, 제동장치, 서스펜션, 저밀도에틸렌, 고밀도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관,</p>

철면조고기, 왁스, 기타 합성수지, 복합비료, 연고, 포트랜드시멘트, 순면사, 남성셔츠, 알루미늄관, 스포츠용품 등				세안용품, 선크림, 라면, 인스턴트 커피, 폴리에스터직물, 기타철도차부품, 기타건설중장비, 에폭시수지, 염화비닐수지, 중후판, 아연괴, 동관, 타이어튜브 등
-	10,444	소계	7,168	-
나프타	1	관세 감축*	4	나프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뱀장어, 넙치, 건 조수산물(멸치, 명태, 조기 등), 합판, 섬유 판, 파티클보드, 단판적층재, 옥시디에탄 올, 폴리카보네이트, 벤젠, 초산비닐, 아 크릴산에틸 등	848	양허 제외	684	페타이어, 석면·석면제품, 전자담배부분품, 가죽(양, 돼지 등), 담배, 주류, 돼지고기·조제품, 상아 등
-	11,293	총합계	7,856	-

* 양측이 상호 5 년간 50% 관세 감축

현재 UAE 수입시장점유율 6 위인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포함 자동차와 5 위인 자동차 부품이 대표적인 수혜 분야에 해당합니다. 중동 내 인기가 급상승 중인 화장품과 식품류에 더해 합성수지, 각종 엔진 및 부품, 냉장고·냉동기기, 의료기기도 수혜 유망품목에 해당하며 이 품목들은 모두 기존 관세가 5%에서 즉시 혹은 5 년, 10 년 내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한국-UAE CEPA 는 대한민국이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CEPA 협정인에 해당하며, UAE 는 미국, 중국, EU 와는 CEPA 를 체결하지 않아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UAE 는 중동 21 개국 중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5 년 기준 UAE 로의 수출 규모는 57 억 달러에 해당하며, UAE 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역 투자 허브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근국까지 교역 투자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UAE 수출업체들은 한국-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효익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2. 한국 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2026년 5월 8일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 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되었던 선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운임 특례 대상>

대상 업체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여 수입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25.3월~'26.2월 내)
적용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 ① 중동상황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경우 ② 중동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되어 있던 선박의 경우 ③ 선박운송 예정이었으나, 중동상황 발발로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
적용 범위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
수입물품 적출국	중동지역 이하 20개국(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적용 물품	제한 없음
지원신청 방법	(잠정/확정신고)수입신고 시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가격신고 및 추후 확정가격 신고 시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신고 (경정청구)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 실시
승인 여부 검토 및 결정	(잠정/확정신고) 확정가격신고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 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 (경정청구) 경정청구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 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

중동발 운임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운임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